

[별표 2]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I. 공통기준

1. 제형의 구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은 다음 표1과 같이 구분되며, 분류란의 제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품에 적용한다.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별도 제형이 제시된 경우에는 해당 제형기준이 공통기준의 제형보다 우선한다.

<표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형 구분

구분	분류
분사형	분무기형(폼형 포함), 스프레이형 ⁽¹⁾ , 훈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²⁾ , 지속방출형, 기타 ⁽³⁾
비분사형	액체형, 에멀션형(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²⁾ , 기타 ⁽³⁾

주 (1)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방식의 제품을 말함

(2)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3) 세부 제형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⁴⁾
1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분사형
2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분사형
3	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	분사형
4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분사형
5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분사형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⁴⁾
6	염화벤잘코늄류 ⁽⁵⁾	분사형
7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	분사형
8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물질	전제형

주 (4) 방향제는 모든 제형에 적용함

(5) 염화벤잘코늄류(C12- 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 등을 위한 용도로 살생물물질 및 보존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 및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II.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별 안전기준이 공통기준보다 우선하며, 분사형 제품의 경우에는 II. 품목별 안전기준의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 물질(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상세용도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 단, 물질별 승인유예기간 이내에서만 사용 가능
- 3)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존제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4. 품목의 용도 제외

인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부착 또는 삽입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II. 품목별 안전기준

제1부 세정제품 (Detergent product group)

제1장 세정제(Cleaners)

1. 적용범위

세정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에 묻은 때와 이물질을 닦고 물로 헹굼 과정 등을 거치는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콘택트렌즈관리용품 등)
- 2)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영유아용, 목욕용 제품류, 인체세정용 제품류)
- 4)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삽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세정제(가발용 세정제, 생리컵 세정제 등)
-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세정제(의료기기 세정제 등)

<표1> 세정제의 용도

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욕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필터용 ⁽¹⁾ , 기타표면세정용 ⁽²⁾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³⁾

주(1)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세정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3) 자동차용 워셔액 제외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5	디클로로메탄	전 제품 (전 제형)	— ⁽⁴⁾
6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7	브롬화에틸	전 제품 (전 제형)	— ⁽⁴⁾
8	노닐페놀류	전 제품 (전 제형)	— ⁽⁴⁾
9	미세플라스틱 ⁽⁵⁾	전 제품 (전 제형)	— ⁽⁴⁾
10	1,3-부타디엔	일반용, 자동차용 ⁽⁶⁾ (전 제형)	5 이하

주(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5)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6) 실내용에 한함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일반용 ⁽⁷⁾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120 이하
2	벤젠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60 이하
3	염산 또는 황산 ⁽⁸⁾	HCl로써 0.04% (w/w) 미만	HCl로써 10% (w/w) 미만	HCl로써 0.04% (w/w) 미만	HCl로써 2% (w/w) 미만
4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⁹⁾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5	1,2-디클로로프로판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80 이하
6	1-메톡시-2-프로판올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4,400 이하
7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60 이하	세륨으로써 15 이하	세륨으로써 15 이하	_(10)
8	1,3-부타디엔	함유금지	함유금지	함유금지	20 이하
9	다이에탄올아민	1,000 이하	700 이하	2,000 이하	75,000 이하

주(7)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8) 염산 또는 황산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9)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세정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10)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¹¹⁾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 ⁽¹¹⁾	자동차용 (외부용)
1	프로필렌글리콜	35 이하	_(12)	30 이하	_(12)
2	개미산	0.5 이하	50 이하	1 이하	10 이하
3	메탄올	2 이하	35 이하	_(12)	_(12)
4	2-프로판올	10 이하	_(12)	20 이하	_(12)
5	아세톤	10 이하	10 이하	_(12)	_(12)
6	나프탈렌	0.2 이하	10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연 번	물 질 명	분 사 형		비 분 사 형	
		일 반 용 ⁽¹¹⁾	자 동 차 용 (외 부 용)	일 반 용 ⁽¹¹⁾	자 동 차 용 (외 부 용)
7	벤질알코올	13 이하	65 이하	3 이하	_(12)
8	에틸렌글리콜	35 이하	_(12)	20 이하	_(12)
9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6 이하	0.002 이하	15 이하
10	살리실산메틸	20 이하	20 이하	_(12)	_(12)
11	벤조산벤질	0.1 이하	0.1 이하	20 이하	_(12)
12	모노에탄올아민	0.04 이하	0.4 이하	0.04 이하	0.4 이하
13	자일렌(o-,m-,p-총합)	3 이하	8 이하	2 이하	20 이하
14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8 이하	16 이하	_(12)	_(12)
15	트리클로산	2 이하	2 이하	2 이하	_(12)
16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1 이하	0.4 이하	1 이하	15 이하
17	염화벤잘코늄류 ⁽¹³⁾	함유금지	함유금지	3.5 이하	60 이하
18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0.1 이하	0.3 이하	0.3 이하	5.8 이하
19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45 이하	_(12)	10 이하	_(12)
20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4 이하	14 이하	3 이하	25 이하
21	에탄올	_(12)	_(12)	45 이하	_(12)
22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_(12)	_(12)	10 이하	65 이하
23	펜에탄올	10 이하	_(12)	55 이하	_(12)
24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2 이하	2 이하	2 이하	40 이하
25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_(12)	70 이하	_(12)
26	과산화수소	0.3 이하	1 이하	0.1 이하	1 이하
27	모르폴린	5 이하	_(12)	1 이하	7 이하
28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_(12)	10 이하	_(12)	3 이하
29	글리옥살	0.01 이하	_(12)	0.002 이하	15 이하
30	산화에틸렌	3 이하	_(12)	0.4 이하	_(12)
31	벤조산	1 이하	_(12)	20 이하	65 이하
32	플루오르화 수소	10 이하	_(12)	_(12)	_(12)
33	소듐 피리싸이온	15 이하	0.3 이하	0.02 이하	15 이하
34	아연 피리싸이온	0.1 이하	_(12)	55 이하	_(12)
35	클로로벤젠	1 이하	_(12)	2 이하	10 이하
36	2-메톡시에탄올	0.4 이하	7 이하	0.05 이하	0.3 이하
3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금지	함유금지	0.02 이하	0.2 이하
38	아크릴산	0.02 이하	0.07 이하	0.02 이하	_(12)
39	이산화염소 ⁽¹⁴⁾	40 이하	140 이하	10 이하	2,000 이하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일반용 ⁽¹¹⁾	자동차용 (외부용)	일반용 ⁽¹¹⁾	자동차용 (외부용)
40	디아졸리디닐우레아	35 이하	_(12)	25 이하	_(12)
41	브로노폴	1 이하	_(12)	_(12)	_(12)
42	글리세롤	40 이하	_(12)	_(12)	_(12)
43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0.7 이하	_(12)	_(12)	_(12)
44	살리실산	35 이하	_(12)	_(12)	_(12)
45	구연산	3 이하	_(12)	_(12)(15)	_(12)
46	메틸파라벤	10 이하	_(12)	15 이하	_(12)
47	염화핵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4 이하	_(12)	1 이하	_(12)
48	탄산수소나트륨	40 이하	_(12)	_(12)(15)	_(12)
49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부틸 에테르	40 이하	_(12)	20 이하	_(12)
50	붕사(보락스)	15 이하	_(12)	_(12)	_(12)
51	제올라이트	0.2 이하	_(12)	_(12)	_(12)
52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 -1,3-프로판디아민	1 이하	30 이하	0.3 이하	15 이하
53	트로클로센나트륨	0.7 이하	_(12)	_(12)	_(12)
54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0.01 이하	4 이하	0.04 이하	2 이하
55	이산화규소	0.3 이하	_(12)	_(12)	_(12)
56	아질산나트륨	25 이하	_(12)	8 이하	_(12)
57	인산	4 이하	_(12)	_(12)	_(12)
58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23 이하	_(12)	_(12)
59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0.03 이하	은으로써 5 이하	_(12)	_(12)
60	2,2-디브로모-3-니트릴로프로피 온아미드	5 이하	45 이하	8 이하	_(12)
61	이산화티타늄	2 이하	_(12)	_(12)	_(12)
62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10 이하	_(12)	4 이하	_(12)
63	3-메틸-3-메톡시 부탄올	4 이하	9 이하	2 이하	_(12)
64	산화아연	0.4 이하	_(12)	3 이하	_(12)

주(11) 실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외관 전용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12) 함량 제한 없음

(13)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4)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15) 티슈형 제품에 한해 15% 이하 적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벤조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수산화칼슘, 1,3-프로판디올, 탄산칼슘, 산화칼슘, 1,2-펜탄디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싸이오황산 나트륨

제2장 제거제(Remover)

1. 적용범위

제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제거제의 용도

일반용 ⁽¹⁾	얼룩제거용, 섬유 얼룩제거용 ⁽²⁾ ,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가발접착제제거용, 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페인트제거용, 기타제거용 ⁽³⁾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³⁾

주 (1)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제거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2)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에 한함

(3)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4	디클로로메탄	전 제품 (전 제형)	— ⁽⁴⁾
5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6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7	브롬화에틸	전 제품 (전 제형)	_(4)
8	노닐페놀류	전 제품 (전 제형)	_(4)
9	벤젠	섬유 얼룩제거용 (전 제형)	5 이하
10	미세플라스틱 ⁽⁵⁾	전 제품 (전 제형)	_(4)

주(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5)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일반용 ⁽⁶⁾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60 ⁽⁷⁾ 이하	60 ⁽⁷⁾ 이하	60 ⁽⁷⁾ 이하	170 ⁽⁷⁾ 이하
2	벤젠 ⁽⁸⁾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90 이하
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⁹⁾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NaOH로써 5% (w/w) 미만
4	메틸피롤리디논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5	1,3-부타디엔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_(10)

주(6)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7) 접착제제거용에 한해 1,000mg/kg 이하 적용

(8) 섬유 얼룩제거용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적용

(9)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제거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10)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 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프로필렌글리콜	_(11)	65 이하
2	개미산	20 이하	8 이하
3	나프탈렌	0.2 이하	0.1 이하
4	벤질알코올	65 이하	20 이하
5	에틸렌글리콜	_(11)	30 이하
6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3 이하	0.01 이하
7	모노에탄올아민	1 이하	0.2 이하
8	자일렌(o-,m-,p-총합)	40 이하	15 이하
9	트리클로산	15 이하	20 이하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5 이하	9 이하
11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70 이하	_(11)
1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2 이하	_(11)
13	염화벤잘코늄류 ⁽¹²⁾	함유금지	45 이하
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_(11)	75 이하
15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55 이하	20 이하
16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65 이하	_(11)
17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5 이하	20 이하
18	트리에탄올아민	55 이하	_(11)
19	과산화수소	2 이하	1 이하
20	모르폴린	15 이하	5 이하
21	글리옥살	0.03 이하	0.01 이하
22	산화에틸렌	7 이하	2 이하
23	벤조산	_(11)	50 이하
24	소듐 피리싸이온	75 이하	_(11)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25	클로로벤젠	40 이하	15 이하
26	2-메톡시에탄올	1 이하	0.3 이하
2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금지	0.2 이하
28	염산 또는 황산 ⁽¹³⁾	HCl로써 1 미만	HCl로써 0.4 미만
29	제라니올	6 이하	6 이하
30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부틸 에테르	_(11)	45 이하
31	3-메틸-3-메톡시 부탄올	1 이하	1 이하
32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3 이하	3 이하
33	벤조산벤질	30 이하	30 이하
34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 3-프로판디아민	0.6 이하	0.6 이하
35	아질산나트륨	15 이하	15 이하
36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7 이하	7 이하

주(11) 함량 제한 없음

(12)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2-페녹시에탄올, 프로필알코올,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메탄올, 글리세롤,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에탄올, 브로노폴, 탄산나트륨, 붕사(보락스), 산

화칼슘, 인산, 탄산칼슘, 1,3-프로판디올, 디메틸폴리메틸 히단토인, 이산화티타늄, 제올라이트,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수산화칼슘, 1,2-펜탄디올

제2부 세탁제품 (Laundry product group)

제1장 세탁세제(Laundry detergents)

1. 적용범위

세탁세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섬유, 신발 등을 세탁하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관리되는 고형 세탁비누(가루 세탁비누, 재활용 고형 세탁비누,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세탁세제의 용도

섬유용, 가죽용, 홈드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¹⁾

주(1) 물 등을 이용한 세탁이 동반되지 않는 섬유 얼룩제거용은 제거제에 적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4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5	브롬화에틸	전 제형	— ⁽¹⁾
6	미세플라스틱 ⁽²⁾	전 제형	— ⁽¹⁾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물질명	전 제형
전인산염	10,000 이하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머스크 케톤	6 이하
2	1,2-이염화에탄	60 이하
3	모노에탄올아민	40 이하
4	트리클로산	10 이하
5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12 이하
6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80 이하
7	과산화수소	25 이하
8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45 이하
9	소듐 피리싸이온	8 이하
10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40 이하
11	개미산	25 이하
12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5 이하
13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7 이하
14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	6 이하
15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3 이하
16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6 이하
17	산화아연	0.3 이하
18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9 이하

4. 생분해도

제품 내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표5의 규격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5> 적용규격별 생분해도

(단위 : %)

구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생분해도	60 이상	70 이상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벤조산나트륨, 에탄올, 벤질알코올, 3-메틸-3-메톡시 부탄올, 4'-하이드록시아세토페논, 제라니올,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메틸파라벤, 리날로올, 구연산, 황산암모늄, 싸이오황산나트륨, 이산화규소, 프로필알코올, 살리실산, 1,2-헥산다이올, 2-프로판올, 메탄올, 벤조산,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롤, 1,2-펜탄다이올, 브로노폴, 탄산칼슘,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콘산염, 탄산수소나트륨, 이산화티타늄, 제올라이트, 수산화나트륨, 산화칼슘, 붕사(보락스), 2-페녹시에탄올, 벤조산벤

질,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에틸렌글리콜, 탄산나
트륨

3) 디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비분사형에 한함)

제2장 표백제(Bleaching agents)

1. 적용범위

표백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에 묻은 때를 없애고 변색된 상태를 희게 하거나 원색을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표백제의 용도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3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4	브롬화에틸	전 제형	— ⁽¹⁾
5	미세플라스틱 ⁽²⁾	전 제형	— ⁽¹⁾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수소이온농도	전 제형
1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³⁾	NaOH로써 5% (w/w) 미만
2	전인산염	10,000 이하
3	과산화수소 ⁽⁴⁾	15% (w/w) 이하

주(3)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한 표백제에 적용되며, 기준은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염기 농도임

(4) 과산화수소를 사용한 표백제에 대하여 적용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인산	25 이하
2	이산화티타늄	1 이하
3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40 이하
4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15 이하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3-메틸-3-메톡시 부탄올,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에탄올, 2-프로판올, 살리실산, 구연산, 리날로올, 벤질알코올,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벤조산벤질, 2-페녹시에탄올,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제올라이트, 트로클로센나트륨, 1,2-헥산다이올, 은, 이산화규소,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탄산나트륨

- 3) 디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알코올, C12-14, 에톡실레이트" (비분사형에 한함)

제3장 섬유유연제(Fabric softeners)

1. 적용범위

섬유유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의류 등을 세탁 또는 건조할 때 섬유를 부드럽게 하거나, 정전기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섬유유연제의 용도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2	벤젠	전 제형	5 이하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4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5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6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APEOs:alkylphenol ethoxylates)계 및 알킬페놀(alkylphenol)계	전 제형	_(1)
7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암모늄계	전 제형	_(1)
8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9	브롬화에틸	전 제형	_(1)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0	2,2'-이미노다이에탄올	전 제형	_(1)
11	형광증백제	전 제형	_(1)
12	미세플라스틱 ⁽²⁾	전 제형	_(1)

주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세정, 연마, 박리 용도로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물에 녹지 않는 5mm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폼알데하이드	75 이하
2	글루타르알데하이드	1,000 이하
3	파라벤류 ⁽³⁾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질 8,000 이하
4	2-페녹시에탄올	10,000 이하
5	트리클로산	1,000 이하
6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⁴⁾	100 이하
7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⁴⁾	15 이하
8	벤즈이소치아졸리논	500 이하
9	벤조산	5,000 이하
10	벤질알코올	10,000 이하
11	납 및 그 화합물	납으로써 20 이하
12	리모넨 ⁽⁵⁾	10,000 이하
13	1,4-다이옥세인	100 이하
14	프로피온알데하이드	3,000 이하

주 (3) 파라벤류 : 메틸파라벤, 부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4) 분사형을 제외한 비분사형 섬유유연제에 대하여 적용

(5) D-리모넨 및 L-리모넨 포함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개미산	10 이하
2	모노에탄올아민	10 이하
3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9 이하
4	염산 또는 황산 ⁽⁶⁾	HCl로써 0.4 미만 (농축형 HCl로써 1.2 이하)
5	과산화수소	4 이하
6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40 이하
7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20 이하
8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7 이하
9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1 이하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4 이하

주(6)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생분해도

제품 내 계면활성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표5의 규격 중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조기 전용으로 사용하는 시트형 제품은 제외한다.

<표5> 적용규격별 생분해도

(단위 : %)

구분	KS I ISO 9439	KS I ISO 7827
생분해도	60 이상	70 이상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에탄올, 제라니올, 벤조산벤질, 3-메틸-3-메톡시 부탄올,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구연산, 탄산수소나트륨, 리날로올, 브로노폴,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메탄올, 2-프로판올, 프로필알코올,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수산화나트륨, 1,2-펜탄디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1,2-헥산다이올, 이산화규소, 싸이오황산 나트륨, 이산화티타늄,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황산암모늄, 탄산나트륨
- 3) 디에틸렌 글리콜 페닐 에테르, 2,6-디메틸-1,3-디옥산-4-일 아세테이트(디메톡산) (비분사형에 한함)

제3부 코팅제품 (Coating product group)

제1장 광택코팅제(Gloss coatings)

1. 적용범위

광택코팅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물체에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광택코팅제의 용도

일반용 ⁽¹⁾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금속장신구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주(1) 운동용품(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광택코팅제는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에 적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 ⁽²⁾
3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 ⁽²⁾
4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6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품 (전 제형)	— ⁽²⁾
7	1,3-부타디엔	일반용, 자동차용 ⁽³⁾ (전 제형)	5 이하

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실내용에 한함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일반용 ⁽⁴⁾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3	벤젠	2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4	나프탈렌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5	망간 및 그 화합물	망간으로써 100 이하	_(5)	_(5)	_(5)
6	지크로늄 및 그 화합물	지크로늄 으로써 400 이하	지크로늄 으로써 320 이하	지크로늄 으로써 1,800 이하	지크로늄 으로써 3,500 이하
7	1,3-부타디엔	함유금지	함유금지	함유금지	40 이하
8	모노에탄올아민	5,000 이하	1,200 이하	2,000 이하	20,000 이하
9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0 이하	10 이하	15 이하	30 이하
10	아크릴산	950 이하	120 이하	35 이하	1,400 이하

주(4)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5) 함량 제한 없음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⁶⁾	실외용	실내용 ⁽⁶⁾	실외용
1	에탄올	30 이하	_(8)	_(8)	_(8)
2	벤조산벤질	20 이하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3	프로필렌글리콜	8 이하	_(8)	_(8)	_(8)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⁶⁾	실외용	실내용 ⁽⁶⁾	실외용
4	펜에탄올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_(8)
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0 이하	55 이하	40 이하	60 이하
6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1 이하	_(8)	_(8)	_(8)
7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2 이하	2 이하	2 이하	5 이하
8	2-프로판올	15 이하	_(8)	40 이하	_(8)
9	트리에탄올아민	30 이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10	에틸렌글리콜	4 이하	30 이하	_(8)	_(8)
11	벤질알코올	3 이하	35 이하	80 이하	45 이하
1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2.5 이하	23 이하	8 이하	15 이하
13	3-요오드-2-프로판일 부틸 카바민산(IPBC)	5 이하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14	메탄올	10 이하	_(8)	60 이하	_(8)
15	자일렌(o-,m-,p-총합)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16	개미산	1 이하	10 이하	1 이하	5 이하
17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0.3 이하	0.3 이하	0.3 이하	0.6 이하
18	염산 또는 황산 ⁽⁷⁾	HCl로써 0.05 미만	HCl로써 1 미만	HCl로써 0.1 미만	HCl로써 0.3 미만
19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1 이하	_(8)	_(8)	_(8)
20	모르폴린	1 이하	7 이하	1 이하	4 이하
21	프로필알코올	65 이하	_(8)	85 이하	_(8)
22	살리실산메틸	20 이하	_(8)	30 이하	60 이하
23	1-헥사데칸올	25 이하	_(8)	_(8)	_(8)
24	이산화규소	10 이하	_(8)	_(8)	_(8)
25	산화에틸렌	0.3 이하	4 이하	15 이하	5 이하
26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6 이하	_(8)	_(8)	_(8)
2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9 이하	50 이하	85 이하	60 이하
28	1,4-디클로로벤젠	2 이하	20 이하	2 이하	10 이하
29	디클로로메탄	10 이하	_(8)	65 이하	_(8)
30	아연 피리싸이온	4 이하	5 이하	55 이하	50 이하
3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금지	함유금지	0.1 이하	0.1 이하
32	염화벤잘코늄류 ⁽⁹⁾	함유금지	함유금지	5 이하	20 이하
33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07 이하	1.5 이하	3 이하	12 이하
34	구연산 ⁽¹⁰⁾	25 이하	_(8)	20 이하	_(8)
35	소듐 피리싸이온	0.3 이하	12 이하	2 이하	20 이하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⁶⁾	실외용	실내용 ⁽⁶⁾	실외용
36	브로노폴	10 이하	_(8)	_(8)	_(8)
37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7 이하	_(8)	_(8)	_(8)
38	벤조산	20 이하	_(8)	_(8)	_(8)
39	메틸 파라벤	15 이하	40 이하	6 이하	_(8)
40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4 이하	8 이하	2 이하	8 이하
41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부틸 에테르	_(8)	_(8)	15 이하	_(8)
42	탄산수소나트륨	35 이하	_(8)	20 이하	_(8)
43	수산화나트륨	25 이하	_(8)	_(8)	_(8)
44	산화아연	3 이하	20 이하	5 이하	20 이하
45	제올라이트	1 이하	30 이하	_(8)	_(8)
46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	0.9 이하	2 이하	0.5 이하	2 이하
47	아질산나트륨	20 이하	45 이하	10 이하	45 이하
48	인산	35 이하	_(8)	_(8)	_(8)
49	과산화수소	1.5 이하	5 이하	0.3 이하	25 이하
50	이산화염소 ⁽¹¹⁾	0.01 이하	0.03 이하	0.001 이하	0.1 이하
51	이산화티타늄	20 이하	_(8)	_(8)	_(8)
52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10 이하	20 이하	5 이하	20 이하
53	3-메틸-3-메톡시 부탄올	6 이하	20 이하	0.8 이하	_(8)

주 (6)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7)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8) 함량 제한 없음

(9)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0) 금속장신구용 외 용도에 한함

(11)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리날로올, 제라니올,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아세톤, 1,3-디클로로프로펜, 수산화칼슘, 산화칼슘, 글리세롤, 탄산칼슘, 디메틸롤디메틸히단토인, 붕사(보락스), 1,2-펜탄디올, 황
- 3) 구연산(금속장신구용에 한함)

제2장 특수목적코팅제(Special purpose coatings)

1. 적용범위

특수목적코팅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에 도포하여 오염, 정전기, 김서림, 미끄럼, 물이 스며드는 것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의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식품위생법」 제2조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코팅제
-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방수, 발수제 등 보수용품
- 3) 자동차 내부 부품의 부식 및 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코팅제

<표1> 특수목적코팅제의 용도

일반용 ⁽¹⁾	발수용, 방수용, 오염 방지용, 정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가죽연화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²⁾

주(1) 목재 마감용은 마감제에, 가죽 경화용은 경화제에 적용

(2) 자동차용 워셔액(발수용)은 제외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 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4	트리페닐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_(3)
5	트리부틸주석화합물	전 제품 (전 제형)	_(3)
6	니켈 및 그 화합물	전 제품 (분사형)	니켈로써 1 이하
7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품 (전 제형)	_(3)
8	알킬페놀에톡실레이트계 및 알킬페놀 (alkylphenol)계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_(3)
9	디알킬(C12-C18)디메틸염화 암모늄계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_(3)
10	2,2'-이미노다이에탄올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_(3)
11	납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1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13	수은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14	비소 및 그 화합물	정전기방지용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15	1,3-부타디엔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주(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 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일반용 ⁽⁴⁾		자동차용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⁵⁾	외부용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120 이하	20 이하	1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90 이하	150 이하	20 이하	300 이하
3	벤젠	30 이하	60 이하	10 이하	90 이하

연 번	물 질 명	일 반 용 ⁽⁴⁾		자 동 차 용	
		분 사 형	비 분 사 형	실 내 용 ⁽⁵⁾	외 부 용
4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500 이하	1,0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5	글루타르알데하이드 ⁽⁶⁾	30 이하	150 이하	_(7)	_(7)
6	1,4-다이옥세인 ⁽⁶⁾	20 이하	150 이하	_(7)	_(7)
7	나프탈렌	20 이하	100 이하	20 이하	200 이하
8	디부틸 프탈레이트	600 이하	650 이하	2,200 이하	1,200 이하

주(4)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5) 발수용 제품은 제외

(6) 정전기방지용에 한함

(7)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 번	물 질 명	분 사 형		비 분 사 형	
		실 내 용 ⁽⁸⁾	실 외 용	실 내 용 ⁽⁸⁾	실 외 용
1	에탄올	30 이하	_(9)	_(9)	_(9)
2	자일렌(o-,m-,p-총합)	2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3	프로필렌글리콜	35 이하	35 이하	_(9)	_(9)
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45 이하	45 이하	_(9)	_(9)
5	2-프로판올	75 이하	75 이하	_(9)	_(9)
6	트리에탄올아민	35 이하	35 이하	70 이하	70 이하
7	에틸렌글리콜	15 이하	15 이하	_(9)	_(9)
8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금지	함유금지	0.7 이하	0.7 이하
9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2 이하	0.8 이하	1 이하	2 이하
10	2-페녹시에탄올	15 이하	75 이하	30 이하	75 이하
11	구연산	10 이하	_(9)	20 이하	40 이하
		55 이하 ⁽¹⁰⁾	_(9)(10)	_(9)(10)	_(9)(10)
12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2 이하	은으로써 15 이하	_(9)	_(9)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실내용 ⁽⁸⁾	실외용	실내용 ⁽⁸⁾	실외용
1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6 이하	구리로써 40 이하	구리로써 10 이하	구리로써 20 이하
14	개미산	4 이하	— ⁽⁹⁾	20 이하	— ⁽⁹⁾
15	인산	4 이하	— ⁽⁹⁾	7 이하	43 이하
16	이산화규소	20 이하	— ⁽⁹⁾	— ⁽⁹⁾	— ⁽⁹⁾
17	산화아연	3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18	이산화티타늄	0.4 이하	15 이하	2 이하	5 이하
19	메틸 파라벤	10 이하	— ⁽⁹⁾	20 이하	40 이하
20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1 이하	8 이하	2 이하	4 이하
21	벤조산벤질	15 이하	— ⁽⁹⁾	23 이하	46 이하
22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 이하	10 이하	2 이하	5 이하
23	N1-(3-아미노프로필)-N1-도데실-1,3-프로판디아민	0.6 이하	2 이하	0.6 이하	1 이하
24	소듐 피리싸이온	7 이하	— ⁽⁹⁾	15 이하	35 이하
25	아질산나트륨	7 이하	45 이하	10 이하	25 이하
26	황산	1 이하	4 이하	6 이하	40 이하
27	과산화수소	2 이하	— ⁽⁹⁾	2 이하	— ⁽⁹⁾
28	염화벤잘코늄류 ⁽¹¹⁾	함유금지	함유금지	10 이하	15 이하
29	아연 피리싸이온	8 이하	— ⁽⁹⁾	35 이하	35 이하
30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0.2 이하	1 이하	0.3 이하	0.7 이하
31	다이프로필렌 글리콜 노말-부틸 에테르	3 이하	20 이하	5 이하	10 이하
32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7 이하	45 이하	10 이하	25 이하
33	3-메틸-3-메톡시 부탄올	6 이하	— ⁽⁹⁾	7 이하	— ⁽⁹⁾
34	프로피코나졸	1 이하	5 이하	2 이하	3 이하

주(8) 실외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9) 함량 제한 없음

(10) 가죽연화용에 한함

(11)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붕사(보락스), 글리세롤,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브로노폴, 벤조산, 벤질알코올, 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황, 프로필알코올, 1,3-프로판디올

제3장 녹 방지제(Anti-rust additives)

1. 적용범위

녹 방지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의 막 형성을 통해 금속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배관 및 보일러용 녹 방지제

2) 연마제 및 녹 방지 페인트류

<표1> 녹 방지제의 용도

차량용⁽¹⁾,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주(1)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니켈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 ⁽²⁾
5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 ⁽²⁾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6	에틸렌디클로라이드	전 제형	_(2)

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50 이하
3	벤젠	1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1,000 이하
5	나프탈렌	100 이하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_(4)	7 이하
2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0 이하	5 이하
3	2-프로판올	_(4)	40 이하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_(4)	25 이하
5	자일렌(o-,m-,p-총합)	_(4)	3 이하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6	모노에탄올아민	4 이하	1 이하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_(4)	6 이하
8	염산 또는 황산 ⁽³⁾	HCl로써 5 미만	HCl로써 5 미만
9	염화벤잘코늄류 ⁽⁵⁾	함유금지	15 이하
10	산화아연	40 이하	10 이하
11	에탄올	_(4)	25 이하
12	제올라이트	25 이하	_(4)
13	제라니올	37 이하	9 이하
14	아질산나트륨	_(4)	25 이하
1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금지	0.6 이하

주(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함량 제한 없음

(5)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탄산칼슘,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메탄올, 벤질알코올, 수산화나트륨, 인산, 이산화티타늄, 3-메틸-3-메톡시 부탄올

제4장 윤활제(Lubricants)

1. 적용범위

윤활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고형물의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하여 마찰력을 최소화시켜 마찰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윤활유 및 그리스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자동차용 브레이크액)
-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내연기관용 윤활유(자동차 엔진오일 등)
- 4)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윤활제(커피머신 윤활제 등)
- 5) 인체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에 사용하거나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윤활제(전기면도기 윤활제, 인체용 윤활제 등)

<표1> 윤활제의 용도

차량용 ⁽¹⁾ ,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주(1) 「도로교통법」의 적용 대상 중 건설기계를 제외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을 말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_(2)
5	에틸렌디클로라이드	전 제형	_(2)

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폼알데하이드	7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50 이하
3	벤젠	10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800 이하
5	나프탈렌	100 이하
6	니켈 및 그 화합물	니켈로써 100 이하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_(4)	7 이하
2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10 이하	5 이하
3	2-프로판올	_(4)	40 이하
4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_(4)	25 이하
5	자일렌(o-,m-,p-총합)	_(4)	3 이하
6	모노에탄올아민	4 이하	1 이하
7	2-(2-메톡시에톡시)에탄올	_(4)	6 이하
8	염산 또는 황산 ⁽³⁾	HCl로써 5 미만	HCl로써 5 미만
9	염화벤잘코늄류 ⁽⁵⁾	함유금지	15 이하

주(3) 제품 자체의 최대 허용 산 농도임

(4) 함량 제한 없음

(5)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리날로올, 트리에탄올아민, 아세톤, 구리

제5장 다림질 보조제(Ironing auxiliaries)

1. 적용범위

다림질 보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섬유류의 구김 제거 등을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다림질 보조제의 용도

의류용, 섬유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아세트알데하이드	전 제형	— ⁽¹⁾
2	폼알데하이드	전 제형	— ⁽¹⁾
3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전 제형	— ⁽¹⁾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10 이하
2	2-프로판올	60 이하
3	아세톤	20 이하

연번	물질명	전 제형
4	알파-아이소메틸아이오논	300 이하
5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550 이하
6	머스크케톤	450 이하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2-페녹시에탄올	1 이하
2	구연산	3 이하
3	글리세롤	45 이하
4	프로필렌글리콜	15 이하
5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10 이하
6	에탄올	20 이하
7	벤조산	20 이하
8	벤질알코올	5 이하
9	벤조산벤질	4 이하
10	탄산수소나트륨	10 이하
11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0.1 이하
12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5 이하
13	이산화티타늄	9 이하
14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2 이하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수산화나트륨

제6장 마감제(finish Agents)

1. 적용범위

마감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목재용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마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마감제의 용도

목재용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나프탈렌	10 이하	10 이하
2	벤젠	30 이하	20 이하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 금지	0.05 이하
2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0.3 이하	3 이하
3	퍼메트린	10 이하	2 이하
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1)	1 이하
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	40 이하

주(1) 함량 제한 없음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3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경화제(Hardeners)

1. 적용범위

경화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신발, 가방 등 가죽용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경화제의 용도

가죽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톨루엔 디이소시아산	전 제형	5 이하
2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_(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아크릴산	250 이하	250 이하

제4부 접착·접합제품 (Adhesives product group)

제1장 접착제(Adhesives)

1. 적용범위

접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표면을 서로 접착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접착제
- 2) 시멘트류, 실리케이트 염류 등의 무기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 3) 문구용·도배용 풀, 테이프 형태의 접착제
- 4) 땀납, 은납 등 금속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접착제
- 5) 미용 또는 분장목적으로 사용되는 접착제(가발·체모용, 가속눈썹·쌍꺼풀용, 인조손톱용 등)

<표1> 접착제의 용도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순간·강력용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 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및 제품	검출허용한도
1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_(1)
2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_(1)
3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_(1)
4	염화비닐	전 제형(PVC용 접착제 제외)	_(1)
5	톨루엔 디이소시아산	전 제형	_(1)
6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_(1)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8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9	비소 및 그 화합물	분사형	비소로써 5 이하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 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일반용		순간·강력용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50 이하	100 이하	50 이하 ⁽²⁾	100 이하 ⁽²⁾
2	아세트알데하이드	350 이하	1,000 이하	350 이하	_(5)
3	클로로포름	120 이하	1,000 이하	120 이하	1,000 이하
4	톨루엔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5	디메틸포름아미드	300 이하	1,000 이하	300 이하	_(5)
6	디클로로메탄	200 이하	800 이하	200 이하	800 이하
7	비소 및 그 화합물	_(5)	비소로써 20 이하	_(5)	비소로써 20 이하
8	벤젠	20 이하	60 이하	20 이하	60 이하
9	자일렌(o-,m-,p-총합)	1,000 이하	1,000 이하	1,000 이하	_(5)
10	하이드로퀴논 ⁽³⁾	_(5)	_(5)	_(5)	1,000 이하
11	아크릴로니트릴 ⁽³⁾	_(5)	_(5)	200 이하	200 이하

연번	물질명	일반용		순간·강력용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12	염화비닐 ⁽⁴⁾	200 이하	200 이하	_(5)	_(5)
13	1,4-다이옥세인	10 이하	10 이하	3,400 이하	4,000 이하
14	에피클로로히드린	150 이하	150 이하	_(5)	_(5)

-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는 1% 이하 적용
 (3)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순간·강력접착제에 적용
 (4) PVC (Polyvinyl chloride) 고분자를 주성분으로 한 접착제 또는 PVC용 접착제에만 적용
 (5)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20 이하	50 이하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3 이하	7 이하
3	산화에틸렌	50 이하	_(6)
4	염화벤잘코늄류 ⁽⁷⁾	함유금지	_(6)
5	인산	17 이하	17 이하
6	제라니올	_(6)	15 이하
7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금지	0.1 이하
8	2,2-디브로모-3-니트릴로프로피온아미드	_(6)	20 이하

- 주(6) 함량 제한 없음
 (7)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에탄올, 프로필렌글리콜,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탄산나트륨, 2-페녹시에탄올, 에틸렌글리콜, 벤질알코올,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3-요오드-2-프로판일 부틸카바민산(IPBC), 메탄올, 자일렌, 아세톤, 은, 프로필알코올, 페놀, t-부탄올, 브로노폴, 산화아연, 2-메틸-1,2-벤즈아이소싸이아졸린-3온,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롤, 탄산수소나트륨, 붕사(보락스), 산화칼슘, 카벤다짐, 탄산칼슘, 1,2-헥산다이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구연산, 구리, 벤조산, 2-프로판올, 수산화나트륨, 디아졸리디닐우레아, 브로민화 소듐

제2장 접합제(Gap and crack fillers)

1. 적용범위

접합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의 균열이나 틈새를 채우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에 사용되는 접합제
- 2) 차량용 퍼티
- 3) 외부 누출 없이 주입할 수 있는 타이어 수리장치(리페어키트 등)를 이용하여 주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실란트

<표1> 접합제의 용도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흠집충진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 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_(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폼알데하이드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1,000 이하
3	나프탈렌	2,000 이하
4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알루미늄으로써 3,000 이하
5	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아세테이트	9,000 이하
6	1-도데칸올	20,000 이하
7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카드뮴으로써 400 이하
8	아크릴산	8,000 이하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1,2,4-트라이메틸벤젠 ⁽²⁾	1.5 이하
2	1,3,5-트라이메틸벤젠 ⁽²⁾	1 이하
3	리튬 및 그 화합물 ⁽³⁾	리튬으로써 10 이하
4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으로써 2 이하
5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15 이하
6	프로피코나졸	20 이하
7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35 이하
8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006 이하
9	에탄올	14 이하

연번	물질명	전제형
10	벤질알코올	4 이하
11	에틸렌글리콜	2 이하
12	2-페녹시에탄올	10 이하
13	2-프로판올	7 이하
14	제올라이트	8 이하
15	이산화티타늄	27 이하
16	1,3-프로판디올	30 이하
17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40 이하
18	벤조산	10 이하
19	프로필알코올	5 이하
20	2,6-다이-터트-부틸-p-크레졸	6 이하
21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⁴⁾	0.005 이하
22	2,2-디브로모-3-니트릴로프로피온아미드	1 이하
23	카벤다짐	10 이하
24	아연 피리싸이온	3 이하
25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2 이하
26	3-요오드-2-프로핀일 부틸 카바민산(IPBC)	9 이하

주(2) 비분사형에 한하며, 분사형의 함량기준은 20 %(w/w) 이하 적용

(3) 비분사형에 한함

(4) 비분사형에 한하며, 분사형은 함유금지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프로필렌글리콜, 수산화나트륨, 브로노폴, 2-페닐페놀, 탄산칼슘, 글리세롤, 산화아연, 탄산수소나트륨, 붕사(보락스), 디메틸폴리메틸 히단

토인, 디아졸리디닐우레아, 황, 아질산나트륨, 이산화규소

3) 리튬(분사형에 한함)

제3장 경화촉진제(Hardening accelerators)

1. 적용범위

경화촉진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접착제의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경화촉진제의 용도

접착제용⁽¹⁾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접착제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나이트로메탄	전 제형	— ⁽²⁾

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벤젠	25 이하	25 이하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이산화티타늄	1 이하	12 이하 ⁽³⁾

주(3) 분말형은 1% 이하 적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에탄올, 2-프로판올

제5부 방향·탈취제품 (Air freshener product group)

제1장 방향제(Air fresheners)

1. 적용범위

방향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공간이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체취 방지용 등)
- 2)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향기 치료제 등)
- 3) 세레용 향 및 말린 꽃잎 등 인위적으로 향을 첨가하지 않은 제품
- 4) 패치·목걸이형 등 인체에 착용하거나 의류에 부착하는 제품

<표1> 방향제의 용도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 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_(1)
5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_(1)
6	벤지딘	전 제형	5 이하
7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5 이하
8	톨루엔 디이소시아산	전 제형	_(1)
9	산화에틸렌	지속방출형 ⁽²⁾	_(1)
10	나프탈렌	지속방출형 ⁽²⁾	_(1)
11	폼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 ⁽²⁾	_(1)
12	아세트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 ⁽²⁾	_(1)
13	글리옥살	지속방출형 ⁽²⁾	_(1)
14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²⁾	_(1)
15	메탄올	지속방출형 ⁽²⁾	_(1)
16	4-메톡시벤질알코올	지속방출형 ⁽²⁾	_(1)
17	아크릴산	지속방출형 ⁽²⁾	_(1)
18	염산	지속방출형 ⁽²⁾	_(1)
19	황산	지속방출형 ⁽²⁾	_(1)
20	인산	지속방출형 ⁽²⁾	_(1)
21	수산화칼슘	지속방출형 ⁽²⁾	_(1)
22	수산화나트륨	지속방출형 ⁽²⁾	_(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2)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³⁾	비분사형	지속방출형 ⁽⁴⁾
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	함유금지
2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	함유금지
3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	함유금지
4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8 이하	-(⁵)	8 이하
5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600 이하	-(⁵)	340 이하
6	아세트알데하이드	60 이하	300 이하	함유금지
7	4-메톡시벤질알코올	100 이하	-(⁵)	함유금지
8	아크릴산	600 이하	1,000 이하	함유금지
9	트리나트륨 에틸렌디아민 테트라아세트산	6,000 이하	-(⁵)	60 이하

주(3)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4)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5)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⁶⁾		비분사형		지속방출형 ⁽⁷⁾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1	프로필렌글리콜	-(⁸)	47 이하	-(⁸)	-(⁸)	2 이하
2	벤조산	3 이하	1 이하	-(⁸)	-(⁸)	0.02 이하
3	2-프로판올	25 이하	12 이하	-(⁸)	-(⁸)	4 이하
4	살리실산	88 이하	37 이하	-(⁸)	-(⁸)	0.6 이하
5	벤질알코올	36 이하	17 이하	-(⁸)	-(⁸)	0.7 이하
6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0.2 이하	-(⁸)	-(⁸)	0.01 이하

연번	물질명	분사형 ⁽⁶⁾		비분사형		지속방출형 ⁽⁷⁾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7	살리실산메틸	27 이하	13 이하	_(8)	_(8)	0.6 이하
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1.5 이하	0.7 이하	_(8)	_(8)	0.01 이하
9	트리클로산	26 이하	16 이하	_(8)	_(8)	0.3 이하
10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01 이하	0.005 이하	_(8)	_(8)	0.0001 이하
11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0.04 이하	은으로써 0.02 이하	_(8)	_(8)	은으로써 0.0003 이하
12	염화벤잘코늄류 ⁽⁹⁾	함유금지	함유금지	_(8)	_(8)	함유금지
13	피레트럼	1 이하	0.7 이하	_(8)	_(8)	0.002 이하
1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0.4 이하	0.12 이하	_(8)	_(8)	0.002 이하
15	다이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_(8)	57 이하	_(8)	_(8)	2.5 이하
16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1 이하	_(8)	_(8)	0.01 이하
17	알파-피넨	7 이하	3 이하	39 이하	30 이하	0.1 이하
18	다이페닐 에테르	1 이하	0.6 이하	7 이하	6 이하	0.03 이하
19	아세트산 비닐	5 이하	2 이하	26 이하	20 이하	0.1 이하
20	트라이사이클로데세닐 아세테이트	6 이하	3 이하	35 이하	27 이하	0.5 이하
21	에탄올	_(8)	_(8)	_(8)	_(8)	8 이하
22	벤조산벤질	_(8)	_(8)	_(8)	_(8)	4 이하
23	탄산칼슘	_(8)	45 이하	_(8)	_(8)	0.4 이하
24	1,3-프로판디올	_(8)	_(8)	_(8)	_(8)	1 이하
25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30 이하	20 이하	_(8)	30 이하	0.2 이하
26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4 이하	15 이하	_(8)	_(8)	0.3 이하
27	3-메틸-3-메톡시부탄올	10 이하	8 이하	20 이하	15 이하	0.1 이하
28	메틸파라벤	30 이하	_(8)	_(8)	_(8)	1 이하
29	브로노폴	1 이하	1 이하	2 이하	1 이하	0.01 이하
30	수산화칼슘	_(8)	45 이하	_(8)	_(8)	함유금지
31	산화칼슘	_(8)	45 이하	_(8)	45 이하 ¹⁾	0.4 이하

연번	물질명	분사형 ⁽⁶⁾		비분사형		지속방출형 ⁽⁷⁾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32	이산화염소 ⁽¹⁰⁾	0.02 이하	0.01 이하	0.03 이하	0.02 이하	함유금지
33	구연산	4 이하	3 이하	-(8)	-(8)	0.03 이하
34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0.1 이하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0.001 이하
35	제라니올	10 이하	7 이하	20 이하	10 이하	0.07 이하
36	글리세롤	-(8)	35 이하	-(8)	-(8)	0.3 이하
37	과산화수소	3 이하	2 이하	5 이하	3 이하	0.02 이하
38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 암모늄	3 이하	15 이하	-(8)	-(8)	1 이하
39	프로필알코올	-(8)	-(8)	-(8)	-(8)	3 이하
40	탄산수소나트륨	30 이하	-(8)	-(8)	-(8)	15 이하
41	수산화나트륨	3 이하	2 이하	4 이하	2 이하	함유금지
42	황산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함유금지
43	이산화티타늄	3 이하	2 이하	3 이하	2 이하	0.02 이하
44	제올라이트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45	산화아연	0.5 이하	0.3 이하	0.5 이하	0.3 이하	0.003 이하
46	아연 피리싸이온	0.2 이하	0.1 이하	-(8)	-(8)	0.001 이하
47	에틸렌디아민테트라 아세트산, 사나트륨염	0.9 이하	0.6 이하	-(8)	-(8)	0.006 이하
48	2-페녹시에탄올	-(8)	-(8)	-(8)	-(8)	0.03 이하
49	이산화규소	0.4 이하	0.3 이하	-(8)	-(8)	0.001 이하

주(6)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7)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8) 함량 제한 없음

(9)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10)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테르피네올, 아세톤, 4-(2,6,6-트라이메틸-1-싸이클로헥센-1-일)-3-부텐-2-온, 프로페인, 9-아세틸-8-세드렌, 에틸 2,3-에폭시-3-페닐뷰트레이트, 테트라하이드로-2-이소부틸-4-메틸피란-4-올과 혼합된 이성질체, 3,7-다이메틸-3-옥탄올(지속방출형을 제외한 제형에 한함)
- 3) 3,7-디메틸노나-1,6-디엔-3-올, 1,2-헥산다이올, 디메틸폴디메틸히단토인

제2장 탈취제(Deodorizing agents)

1. 적용범위

탈취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의류·섬유·신발 등 제품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탈취제
- 2) 인체에 직접 부착 또는 삼입, 접촉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생리대, 속옷 등)의 탈취제

<표1> 탈취제의 용도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 ⁽¹⁾

주(1)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산화에틸렌	전 제형	— ⁽²⁾
2	나프탈렌	전 제형	— ⁽²⁾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3	벤젠	전 제형	5 이하
4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5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6	붕소산 사나트륨염	전 제형	_(2)
7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형	_(2)
8	벤지딘	지속방출형 ⁽³⁾	_(2)
9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지속방출형 ⁽³⁾	_(2)
10	톨루엔 디이소시아산	지속방출형 ⁽³⁾	_(2)
11	폼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 ⁽³⁾	_(2)
12	아세트알데하이드	지속방출형 ⁽³⁾	_(2)
13	글리옥살	지속방출형 ⁽³⁾	_(2)
14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³⁾	_(2)
15	메탄올	지속방출형 ⁽³⁾	_(2)
16	4-메톡시벤질알코올	지속방출형 ⁽³⁾	_(2)
17	아크릴산	지속방출형 ⁽³⁾	_(2)
18	염산	지속방출형 ⁽³⁾	_(2)
19	황산	지속방출형 ⁽³⁾	_(2)
20	인산	지속방출형 ⁽³⁾	_(2)
21	수산화칼슘	지속방출형 ⁽³⁾	_(2)
22	수산화나트륨	지속방출형 ⁽³⁾	_(2)

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 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 번	물 질 명	분 사 형 ⁽⁴⁾	비 분 사 형	지 속 방 출 형 ⁽⁵⁾
1	폼알데하이드	12 이하	25 이하	함유금지
2	메탄올	2,000 이하	2,000 이하	함유금지
3	아세트알데하이드	70 이하	300 이하	함유금지
4	이산화염소 ⁽⁶⁾	2 이하	2 이하	함유금지
5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8 이하	-(7)	8 이하
6	글리옥살	30 이하	70 이하	함유금지
7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600 이하	-(7)	340 이하

주(4)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5)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6)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7) 함량 제한 없음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 번	물 질 명	분 사 형 ⁽⁸⁾			비 분 사 형		지 속 방 출 형 ⁽⁹⁾
		실 내 공 간 용	물 체 용, 밀 폐 공 간 용	자 동 차 용 (실 내 용)	일 반 용	자 동 차 용 (실 내 용)	
1	프로필렌글리콜	-(10)	-(10)	46 이하	-(10)	-(10)	2 이하
2	벤조산	3 이하	10 이하	1 이하	-(10)	-(10)	0.02 이하
3	2-프로판올	20 이하	24 이하	12 이하	-(10)	-(10)	4 이하
4	살리실산	81 이하	19 이하	37 이하	-(10)	-(10)	0.6 이하
5	벤질알코올	32 이하	34 이하	16 이하	-(10)	-(10)	0.7 이하
6	에틸렌글리콜	0.2 이하	6 이하	0.2 이하	-(10)	-(10)	0.01 이하
7	살리실산메틸	25 이하	26 이하	13 이하	-(10)	-(10)	0.6 이하
8	벤조산벤질	75 이하	27 이하	75 이하	-(10)	-(10)	4 이하
9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1.3 이하	1 이하	0.68 이하	-(10)	-(10)	0.01 이하
10	트리클로산	8 이하	3 이하	16 이하	-(10)	-(10)	0.3 이하

연 번	물 질 명	분 사 형 ⁽⁸⁾			비 분 사 형		지 속 방 출 형 ⁽⁹⁾
		실 내 공 간 용	물 체 용, 밀 폐 공 간 용	자 동 차 용 (실 내 용)	일 반 용	자 동 차 용 (실 내 용)	
11	염화디데실디메틸 암모늄	0.01 이하	0.18 이하	0.0015 이하	_(10)	_(10)	0.0001 이하
12	염화 벤잘코늄류 ⁽¹¹⁾	함유금지	함유금지	함유금지	_(10)	_(10)	함유금지
13	피레트럼	1 이하	1 이하	0.7 이하	_(10)	_(10)	0.0015 이하
1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0.3 이하	0.4 이하	0.1 이하	_(10)	_(10)	0.002 이하
15	다이프로필렌 글리콜메틸에테르	_(10)	_(10)	56 이하	_(10)	_(10)	2.5 이하
16	트리에탄올아민	2 이하	10 이하	1 이하	_(10)	_(10)	0.014 이하
17	에틸렌디아민 테트라 아세트산 사나트륨염	0.9 이하	6 이하	0.5 이하	_(10)	_(10)	0.006 이하
18	알파-피넨	6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0 이하	0.14 이하
19	모르폴린	7 이하	10 이하	4 이하	39 이하	31 이하	0.15 이하
20	트리에틸렌 글리콜	15 이하	23 이하	9 이하	92 이하	71 이하	0.3 이하
21	모노에탄올아민	0.3 이하	0.5 이하	0.2 이하	2 이하	1 이하	0.007 이하
22	트라이사이클로 데세닐 아세테이트	6 이하	9 이하	4 이하	35 이하	27 이하	0.5 이하
23	염산	0.5 미만	0.8 미만	함유금지	3 미만	2 미만	함유금지
24	이산화규소	0.1 이하	1.0 이하	0.08 이하	_(10)	_(10)	0.001 이하
25	산화아연	0.4 이하	3.2 이하	0.2 이하	_(10)	_(10)	0.003 이하
26	개미산	35 이하	30 이하	25 이하	_(10)	40 이하	0.3 이하
27	1,3-프로판디올	_(10)	_(10)	_(10)	_(10)	_(10)	1 이하
28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0.03 이하	은으로써 0.03 이하	은으로써 0.02 이하	_(10)	_(10)	은으로써 0.0002 이하
29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30 이하	25 이하	20 이하	_(10)	30 이하	0.2 이하
30	2,6-다이-tert-뷰틸-p-크레졸	7 이하	4 이하	15 이하	10 이하	_(10)	0.25 이하
31	3-메틸-3-메톡시 부탄올	10 이하	10 이하	8 이하	20 이하	15 이하	0.1 이하
32	메틸 파라벤	_(10)	30 이하	_(10)	_(10)	_(10)	1 이하
33	브로노폴	1 이하	1 이하	1 이하	2 이하	1 이하	0.01 이하
34	탄산칼슘	_(10)	_(10)	45 이하	_(10)	_(10)	0.4 이하

연 번	물 질 명	분사형 ⁽⁸⁾			비분사형		지속 방출형 ⁽⁹⁾
		실내 공간용	물체용, 밀폐 공간용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자동차용 (실내용)	
35	수산화칼슘	_(10)	_(10)	45 이하	_(10)	_(10)	함유금지
36	산화칼슘	_(10)	_(10)	45 이하	_(10)	45 이하	0.4 이하
37	구연산	4 이하	3 이하	3 이하	_(10)	_(10)	0.03 이하
38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0.1 이하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0.2 이하	구리로써 0.001 이하
39	제라니올	10 이하	9 이하	7 이하	20 이하	10 이하	0.07 이하
40	글루타르알데하이드	0.05 이하	0.04 이하	0.04 이하	0.09 이하	0.05 이하	0.0003 이하
41	글리세롤	_(10)	45 이하	35 이하	_(10)	_(10)	0.3 이하
42	과산화수소	3 이하	3 이하	2 이하	5 이하	3 이하	0.02 이하
43	염화hex사데실트리 메틸암모늄	6 이하	3 이하	15 이하	10 이하	_(10)	1 이하
44	인산	5 이하	4 이하	3 이하	_(10)	_(10)	함유금지
45	프로필알코올	_(10)	_(10)	_(10)	_(10)	_(10)	3 이하
46	소듐 피리싸이온	0.1 이하	0.1 이하	0.1 이하	_(10)	_(10)	0.006 이하
47	탄산나트륨	7 이하	6 이하	5 이하	_(10)	_(10)	0.05 이하
48	탄산수소나트륨	_(10)	30 이하	_(10)	_(10)	_(10)	15 이하
49	수산화나트륨	3 이하	3 이하	2 이하	4 이하	2 이하	함유금지
50	아질산나트륨	_(10)	_(10)	_(10)	_(10)	_(10)	0.7 이하
51	황산	0.01 이하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0.01 이하	함유금지
52	이산화티타늄	3 이하	3 이하	2 이하	3 이하	2 이하	0.02 이하
53	제올라이트	0.2 이하	0.2 이하	0.1 이하	0.2 이하	0.2 이하	0.001 이하
54	2-페녹시에탄올	_(10)	_(10)	_(10)	_(10)	_(10)	0.03 이하
55	트로클로센나트륨	0.8 이하	0.7 이하	0.6 이하	2 이하	0.9 이하	0.006 이하
56	에탄올	_(10)	_(10)	_(10)	_(10)	_(10)	8 이하

주(8) 지속방출형 이외의 모든 분사형 제품에 적용

(9) 지속방출형이란 실내공간에서 기화식, 가열식, 휘산식 등 연속 분사 설정이 가능한 전용기기를 이용한 제품을 말함. 다만, 자동압축분사형 또는 팬을 이용하여 휘발시키는 형태의 경우에는 시간당 누적 분사시간 1분 이상 또는 시간당 누적 방출량이 2g 이상인 제품에 한해 적용

(10) 함량 제한 없음

(11) 염화벤잘코늄류(C12-C18,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의 총합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테르피네올, 아세톤, 9-아세틸-8-세드렌, 프로페인, 자일렌설펜네이트 나트륨, 1,2-펜탄디올, 황,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콘산염(지속방출형을 제외한 제형에 한함)
- 3) 3,7-디메틸노나-1,6-디엔-3-올, 디메틸롤디메틸 히단토인, 1,2-헥산다이올

제6부 염색·도색제품 (Dye and Colorant painting product group)

제1장 물체 염색제(Dye agents)

1. 적용범위

물체 염색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화학물질을 물체에 침투시켜 색을 입히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화장품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염색제와 그 외 인체용 염색제
- 2) 산업통상부 고시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11 (학용품)에 따른 그림물감 등
- 3) 미술용품(일반 회화용 물감 등)

<표1> 물체 염색제의 용도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_(1)
3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5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6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으로써 5 이하
7	6가 크로뮴	전 제형	_(1)
8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10	아조염료	전 제형	_(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벤젠	30 이하	40 이하
2	1,4-다이옥세인	20 이하	20 이하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부틸셀로솔브	75 이하	_(2)
2	톨루엔	25 이하	2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55 이하	70 이하
4	개미산	30 이하	20 이하
5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함유 금지	3 이하
6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_(2)	35 이하

주(2) 함량 제한 없음

4. 제 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탄산나트륨,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소듐 피리싸이온, 브로노폴,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디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에탄올, 2-프로판올, 2-페녹시에탄올, 수산화나트륨, 이산화규소, 이산화티타늄, 3-요오드-2-프로판일 부틸 카바민산(IPBC),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부틸 에테르, 4-클로로-m-크레졸, 구리, 메탄올, 프로필알코올, 구연산, 리날로올, 벤질알코올, 제라니올, 에틸렌글리콜, 염화헥사데실 트리메틸암모늄, 벤조산벤질, 탄산수소나트륨, 탄산칼슘, 아질산나트륨, 디아졸리디닐우레아

제2장 물체 도색제(Colorant painting agents)

1. 적용범위

물체 도색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물체 표면에 색을 입히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

2) 미술용품(일반 회화용 물감 등)

<표1> 물체 도색제의 용도·제형

용도		제형
자동차용 ⁽¹⁾	실내용, 외부용	공통 제형 기준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분사형(스프레이형)

주(1) 자동차 부분 보수용에 한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2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 ⁽²⁾
3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4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5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6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으로써 5 이하
7	6가 크로뮴	전 제형	_(2)
8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주(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일반용 ⁽³⁾	자동차용	
		분사형	실내용	외부용
1	벤젠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2	1,4-다이옥세인	30 이하	30 이하	800 이하
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으로써 2,000 이하	구리으로써 2,000 이하	구리으로써 50,000 이하
4	나프탈렌	30 이하	30 이하	70,000 이하

주(3) 자동차용 전용 제품 이외의 모든 제품을 말함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46 이하	_(4)

주(4) 함량 제한 없음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에탄올, 2-프로판올, 아세톤,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롤, 메탄올, 에틸렌 글리콜, 2-페녹시에탄올, 탄산칼슘, 이산화규소, 산화아연, 1,2-벤즈 아이소티아졸-3(2H)-온(BIT), 프로필렌글리콜,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수산화나트륨,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제7부 자동차 전용 제품 (Auto product group)

제1장 자동차용 워셔액(Windshield washer fluids for automobiles)

1. 적용범위

자동차용 워셔액이란 자동차의 앞면, 뒷면 유리를 와이퍼로 세정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자동차용 워셔액의 용도·제형

용도 ⁽¹⁾	제형
일반용, 발수용	액체형

주(1) 일반용 :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워셔액
발수용 :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워셔액에 실리콘 성분 등을 첨가하여 발수기능이 있는 워셔액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물질명	일반용·발수용
메탄올	0.6 이하

3. 안전요구사항

자동차용 워셔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을 띠는 액체로써 표3의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자동차용 워셔액의 안전요구사항⁽²⁾

항 목				일 반 용		발수용	
어는점(원액) , ℃				- 25.0 이하			
pH값		원액		6.5 ~ 10.0		4.0 ~ 10.0	
		최저사용농도		6.5 ~ 10.0		4.0 ~ 10.0	
세정성(최저사용농도)				대조 비교액과 비교하여 세정성이 동등 이상일 것			
혼합성(원액, 시료:혼합성시험액=50:50)				분리, 침전물 및 석출물이 없을 것			
발수성(°)		원액		-		65 이상	
		최저사용농도					
금속에 대한 부식성 (최저사용농도) [(50±2)℃, 48h]	무게 변화 mg/cm²	알루미늄		± 0.30			
		황 동		± 0.15			
		아연도금 강판		± 0.80			
	시험후 시험편의 겉모양		시험편과 스페이서 접촉부 이외에 현저한 피팅 및 거침이 없을 것				
	고무에 대한 영향 (원액) [(50±2)℃, 120h]	무게변화 %	천연고무		± 1.5		
클로로프렌고무			± 2.0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2.0				
경도변화 IRHD 또는 HS		천연고무		± 3.0			
		클로로프렌고무		± 3.0			
		에틸렌프로필렌고무		± 3.0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표면의 점성, 카본 블랙의 이탈 및 균열 등이 없을 것					
도막(도료 도포막)에 대한 영향 (원액) [(50±2)℃, 6h]	시험 후 도막(도료 도포막) 표면의 겉모양	열처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도장판 (메탈릭색)		청	도막(도료 도포막)의 연화 및 부풀음 없고, 광택 및 색이 시험전·후에 현저한 변화가 없을 것. 또한, 워셔액에 함유된 색소의 정착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적을 것		
		아미노알키드 수지 에나멜 도장판 (솔리드색)					
플라스틱에 대한 영향 [(50±2)℃, 120h]	무게변화 mg/cm²	폴리에틸렌수지		± 1.0			
		폴리프로필렌수지		± 1.0			
		ABS 수지		± 4.0			
		연질 염화비닐수지		± 3.0			
		폴리아세탈수지		± 3.0			
	시험 후 시험편의 겉모양		현저한 변형이 없을 것				
안정성	가열안정성 [(50±2)℃, 8h]	pH값	원 액	6.5 ~ 10.0		4.0 ~ 10.0	
			최저사용농도	6.5 ~ 10.0		4.0 ~ 10.0	
		시험후 액의 겉모양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저온안정성 [(-15±2)℃, 8h]	원 액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최저사용농도		결정성의 침전물이 없을 것					
인 화 점(원 액)				측정값을 기록한다.			

주(2)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워셔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제2장 자동차용 부동액(Engine antifreezes)

1. 적용범위

부동액이란 액냉식 내연기관용 냉각수의 동결방지와 부식 방지 등을 목적으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자동차용 부동액의 용도·제형

용도	제형
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 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액체형

2. 안전요구사항

자동차용 부동액은 침전물 및 부유하는 이물을 함유하지 않는 균일하고 착색한 액체로써 표2 또는 표3의 용도별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농축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¹⁾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필렌글리콜형		
어는점(℃)			50부피 % 수용액	-34.0 이하	-32.0 이하	
			30부피 % 수용액	-14.5 이하	-	
pH			30부피 % 수용액	7.0~11.0	-	
			50부피 % 수용액	-	7.5~11.0	
예비 알칼리도			원 액	보 고		
금 속 부식성 30부피 % 혼합수용액 (88±2) ℃, (336±2) h	금 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²)	알루미늄주물	±0.30	±0.30	
			주 철	±0.15	±0.15	
			강	±0.15	±0.10	
			황 동	±0.15	±0.10	
			댐 납	±0.30	±0.30	
			구 리	±0.15	±0.10	
	겉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시험 중의 기포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침전량(부피 %)		0.5 이하		
비 중 에틸렌글리콜 (20/20 ℃) 프로필렌글리콜 (15.5/15.5 ℃)			원 액	1.114 이상	1.030~1.065	
끓는점(℃)			원 액	155 이상	152 이상	
거품성(mL)			30부피 % 수용액	4 이하		
수 분(%)			원 액	5.0 이하		
순환부식성 30부피 % 혼합수용액 (88±3) ℃, (1000±2) h	금 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²)	알루미늄주물	±0.60		
			주 철	±0.30	±0.20	
			강	±0.30	±0.20	
			황 동	±0.30	±0.20	
			댐 납	±0.60		
			구 리	±0.30	±0.20	
	겉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11.0		
		pH의 변화		±1.0		
		예비 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부품의 상태	펌프 실부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펌프게이싱의 내면과 펌프날개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주(1)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표3> 50부피 % 희석형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²⁾

항 목			에틸렌글리콜형		프로필렌글리콜형	
어는점(℃)			원 액	-34.0 이하	-32.0 이하	
pH			원 액	7.0~11.0	7.5~11.0	
예비 알칼리도			원 액	보 고		
금 속 부식성 60부피 % 혼합수용액 (88±2) ℃, (336±2) h	금 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²)	알루미늄주물	±0.30	±0.30	
			주 철	±0.15	±0.15	
			강	±0.15	±0.10	
			황 동	±0.15	±0.10	
			땜 납	±0.30	±0.30	
			구 리	±0.15	±0.10	
	겉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와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다.			
	시험 중의 기포		냉각기에서 거품이 넘치지 않을 것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11.0			
		pH의 변화	±1.0			
		예비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침전량(부피 %)	0.5 이하			
비 중 에틸렌글리콜 (20/20 ℃) 프로필렌글리콜 (15.5/15.5 ℃)		원 액	1.065 이상	1.025 이상		
끓는점(℃)		원 액	108 이상	104 이상		
거품성(mL)		60부피 % 수용액	4 이하			
순환부식성 60부피 % 혼합수용액 (88±3) ℃, (1000±2) h	금 속 시험편	무게의 변화량 (mg/cm²)	알루미늄주물	±0.60		
			주 철	±0.30	±0.20	
			강	±0.30	±0.20	
			황 동	±0.30	±0.20	
			땜 납	±0.60		
			구 리	±0.30	±0.20	
	겉 모 양		시험편과 스페이서의 접촉부 이외에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식이 없을 것. 다만, 변색은 지장 없음			
	시험 후의 액의 성상	pH	6.5~11.0			
		pH의 변화	±1.0			
		예비 알칼리도의 변화(%)	보 고			
		액 상	색은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액은 분리, 겔의 발생 등 심한 변화가 없을 것			
	부 품의 상태	펌프 실부	운전 중 작동불량을 일으키지 않고, 액의 누출과 이상음이 없을 것			
		펌프게이싱의 내면과 펌프날개	심한 변화가 없을 것			

주(2) 신차 출고시 차량에 포함되는 부동액의 안전요구사항은 차량 제조업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준을 적용 가능함

제8부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제1장 인쇄용 잉크·토너(Ink cartridges and toners)

1. 적용범위

인쇄용 잉크·토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문서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에 사용되는 액체 형태 등의 소모품과 레이저 프린터 또는 복사기에 사용되는 분말 형태 등의 소모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인쇄용 잉크·토너의 용도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3	수은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수은으로써 1 이하
4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으로써 5 이하
5	6가 크로뮴	전 제형	_(1)
6	노닐페놀류	전 제형	_(1)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7	아조염료	전 제형	_(1)
8	1,4-다이옥세인	전 제형	5 이하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1	벤젠	17 이하	5 이하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황산	0.03 이하
2	프로필렌글리콜	5 이하 ⁽²⁾
3	2-프로판올	25 이하
4	프로필알코올	15 이하
5	에틸렌글리콜	15 이하
6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부틸 에테르	10 이하
7	산화아연	7 이하
8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1 이하
9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의 합 ⁽³⁾	0.04 이하
10	은 및 그 화합물	은으로써 15 이하

주(2) 토너 제품에 한하며, 잉크 제품은 15 %(w/w) 이하 적용

(3) 비분사형에 한함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에탄올, 이산화티타늄, 글리세롤, 탄산나트륨, 수산화나트륨, 이산화규소

제2장 인주(Red seal ink pads)

1. 적용범위

인주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솜·툽밥과 같은 섬유에 기름과 레이크안료 등을 넣어 사무용 등으로 도장·인장을 찍을 때 사용하는 붉은 계열 색료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스펀지에 잉크를 넣거나 함침시켜 사용하는 스탬프 잉크 및 서화 등에 사용되는 낙관용 인주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인주의 용도

사무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로써 5 이하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카드뮴으로써 1 이하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으로써 500 이하
2	납 및 그 화합물	납으로써 500 이하

제3장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Correction fluids and tapes)

1. 적용범위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볼펜 등으로 써서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글씨 등을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나 테이프 형태의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의 용도

문서수정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제9부 미용제품 (Beauty product group)

제1장 미용 접착제(Adhesives for beauty)

1. 적용범위

미용 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속눈썹·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미용 접착제로 볼 수 있는 제품 중 테이프 또는 스티커 형태의 제품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중 부속서 11(어린이용 장신구)에 해당하는 제품용 접착제

<표1> 미용 접착제의 용도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 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4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5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전 제형	_(1)
6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전 제형	_(1)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_(1)
8	유기수은화합물	전 제형	_(1)
9	톨루엔 디이소시아산	전 제형	_(1)
10	아크릴로니트릴	전 제형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제외)	_(1)
11	디클로로메탄	전 제형	_(1)
12	2-부톡시에탄올(부틸셀로솔브)	전 제형	_(1)
13	나프탈렌	전 제형	_(1)
14	납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납으로써 1 이하
15	비소 및 그 화합물	전 제형	비소으로써 5 이하
16	삼산화안티몬	전 제형	2 이하 (안티몬으로)
17	클로로포름	전 제형	_(1)
18	디메틸포름아미드	전 제형	_(1)
19	메틸메타크릴레이트	전 제형	_(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 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폼알데하이드	20 이하 ⁽²⁾
2	톨루엔	1,0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500 이하
4	아크릴로니트릴 ⁽³⁾	200 이하
5	하이드로퀴논 ⁽³⁾	1,000 이하

주(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는 1% 이하 적용

(3)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용 접착제에만 적용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50 이하
2	2-옥틸-3(2H)-이소티아졸론	7 이하
3	디부틸프탈레이트	0.1 이하
4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20 이하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2)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2-프로판올, 구연산, 메틸파라벤, 벤질알코

올, 2-페녹시에탄올, 탄산나트륨, 이산화규소, 디에틸렌 글라이콜
모노-N-뷰틸 에테르, 글리세롤, 에틸렌글리콜, 벤조산벤질, 탄산수
소나트륨, 1,2-펜탄디올, 이산화티타늄,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
테르

제2장 문신용 염료(Tattoo inks)

1. 적용범위

문신용 염료란 신체부위(피부)에 표1의 용도로 시술하는 염료로서 피부 속까지 침투하여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체용 염료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문신용 염료의 용도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 및 표3과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2-아미노-6-에 토실나프탈린	전 제형	-
2	4-아미노-3-플루오로페놀	전 제형	-
3	4-아미노아조벤젠	전 제형	-
4	o-아미노아조톨루엔	전 제형	-
5	벤지딘	전 제형	-
6	바이페닐-4-일아민	전 제형	-
7	p-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
8	4-클로로-o-톨루이딘	전 제형	-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9	3,3'-디클로로벤지딘	전 제형	-
10	3,3'-디메톡시벤지딘	전 제형	-
11	3,3'-디메틸벤지딘	전 제형	-
12	P-크레시딘	전 제형	-
13	2,4-디아미노아니솔	전 제형	-
14	4,4'-메틸렌비스[2-클로로아닐린]	전 제형	-
15	4,4'-메틸렌다이아닐린	전 제형	-
16	4,4'-메틸렌비스(2-메틸아닐린)	전 제형	-
17	톨루엔-2,4-디아민	전 제형	-
18	2-나프틸아민	전 제형	-
19	5-나이트로-O-톨루딘	전 제형	-
20	1,2-벤즈페난트렌	전 제형	-
21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전 제형	-
22	베릴륨	전 제형	-
23	클로로포름	전 제형	-
24	디부틸프탈레이트	전 제형	-
25	안트라센	전 제형	-
26	O-아니시딘	전 제형	-
27	니켈	전 제형	-
28	비소	전 제형	5 이하
29	카드뮴	전 제형	1 이하
30	수은	전 제형	1 이하
31	납	전 제형	1 이하
32	6가 크로뮴	전 제형	-
33	염화비닐	전 제형	-
34	1,2-벤즈안트라센	전 제형	-
35	나프탈렌	전 제형	-
36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7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표3> 제 품 내 함유금지 색명

(단위 : mg/kg)

연 번	색 명 (Color Index)	색 번 호 (CI Number)	적 용 제 형	검 출허용한도
1	Acid Green 16	44025	전 제 형	-
2	Acid Red 26	16150	전 제 형	-
3	Acid Violet 17	42650	전 제 형	-
4	Acid Violet 49	42640	전 제 형	-
5	Acid Yellow 36	13065	전 제 형	-
6	Basic Blue 7	42595	전 제 형	-
7	Basic Green 1	42040	전 제 형	-
8	Basic Red 1	45160	전 제 형	-
9	Basic Red 9	42500	전 제 형	-
10	Basic Violet 1	42535	전 제 형	-
11	Basic Violet 10	45170	전 제 형	-
12	Basic Violet 3	42555	전 제 형	-
13	Disperse Blue 1	64500	전 제 형	-
14	Disperse Blue 106	-	전 제 형	-
15	Disperse Blue 124	-	전 제 형	-
16	Disperse Blue 3	61505	전 제 형	-
17	Disperse Blue 35	-	전 제 형	-
18	Disperse Orange 3	11005	전 제 형	-
19	Disperse Orange 37	-	전 제 형	-
20	Disperse Red 1	11110	전 제 형	-
21	Disperse Red 17	11210	전 제 형	-
22	Disperse Yellow 3	11855	전 제 형	-
23	Disperse Yellow 9	10375	전 제 형	-
24	Pigment Orange 5	12075	전 제 형	-
25	Pigment Red 53	15585	전 제 형	-
26	Pigment Violet 3	42535:2	전 제 형	-
27	Pigment Violet 39	42555:2	전 제 형	-
28	Solvent Blue 35	61554	전 제 형	-
29	Solvent Orange 7	12140	전 제 형	-
30	Solvent Red 24	26105	전 제 형	-
31	Solvent Red 49	45170:1	전 제 형	-
32	Solvent Violet 9	42555:1	전 제 형	-
33	Solvent Yellow 1	11000	전 제 형	-
34	Solvent Yellow 2	11020	전 제 형	-
35	Solvent Yellow 3	11160	전 제 형	-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4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바륨	50 이하
2	코발트	25 이하
3	구리	25 이하
4	셀레늄	2 이하
5	안티몬	2 이하
6	주석	50 이하
7	아연	50 이하
8	파라벤류	단일물질 4,000 이하, 혼합물 8,000 이하
9	폼알데하이드	20 이하
10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총합으로 0.5 이하 (단, 벤조-a-피렌의 함유량은 0.005 이하)

4. 문신용 염료의 내용물은 무균이어야 한다. 무균시험방법은 대한민국 약전 일반시험법의 무균시험법에 따른다.

제10부 여가용품 관리제품

(Management product group for Leisure goods)

제1장 운동용품 세정광택제(Cleaners/Brightener for Sporting goods)

1. 적용범위

운동용품 세정광택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운동용품에 묻은 때 또는 이물질들을 세정·제거하거나 광택 효과를 내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의류에 사용하는 제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의 용도

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골프용품		볼링용품		탁구용품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분사형	비분사형
1	벤젠	50 이하	10 이하	13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10 이하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 번	물 질 명	분 사 형	비 분 사 형
1	이산화티타늄	2 이하	0.3 이하
2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IPBC)	5 이하	3 이하
3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1)	10 이하
4	구연산	-(1)	20 이하
5	2-프로판올	-(1)	55 이하

주(1) 함량 제한 없음

3. 제 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3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글리세롤, 에탄올

제11부 살균제품 (Disinfection products group)

제1장 살균제(Disinfectants)

1. 적용범위

살균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에서 살균, 향균, 소독 등을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물수건, 물티슈 등)
- 2)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소독·향균제품
- 3)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등 살생물처리제품
- 4) 인체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제품
- 5)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아닌 병원 내 의료행위 등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살균제(의료기기 살균제 등)

<표1> 살균제의 용도

일반용	일반물체용 ⁽¹⁾ , 배수관용, 필터용 ⁽²⁾ ,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 ⁽³⁾
특수목적용	어린이용품용 ⁽⁴⁾ , 칫솔·혀크리너용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⁵⁾	일반물체용 ⁽⁶⁾ ,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 주 (1)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2) 공기청정기용 및 에어컨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에 사용하는 제품에 한함
(3) 냉장고, 신발장 등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한하며, 상세용도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4)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용품에 사용되는 소독제를 말함
(5) 전기분해장치를 통해 사용현장에서 염소이온으로부터 살균수를 생성하는 제품에 한함
(6) 마스크용, 인체용 등을 제외한 일반물체에 사용하는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제품에 한함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부틸 에테르	전 제품 (전 제형)	_(7)
4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5	산화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_(7)
6	아크릴산	전 제품 (전 제형)	_(7)
7	차아염소산계	특수목적용 (전 제형)	유효염소로써 10 이하
8	붕산	어린이용품용 (전 제형)	붕소(B)로써 10 이하
9	납	칫솔 · 헝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0	카드뮴	칫솔 · 헝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11	비소	칫솔 · 헝크리너용 (전 제형)	1 이하

주(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폼알데하이드	40 이하	100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100 이하	200 이하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3	클로로포름	30 이하	30 이하
4	1,2-디클로로프로판	50 이하	200 이하
5	산화세륨	세륨으로써 1,000 이하	세륨으로써 1,500 이하
6	1-메톡시-2-프로판올	8,000 이하	10,000 이하
7	아질산나트륨 ⁽⁸⁾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아질산 이온으로써 80 이하
8	과황산화합물 ⁽⁹⁾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과황산염으로써 800 이하

주(8) 어린이용품용에 한함

(9) 칫솔·혀클리너용에 한함

4. 사용가능 주성분

살균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살균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3) O-벤질-p-클로로페놀, 탄산나트륨, 클로록실레놀; 4-클로로-3,5-다이메틸페놀, 2-페녹시에탄올, 탄산칼륨, 황산아연, 테트라아세틸에틸렌다이아민, 글리세롤, 프로필렌글리콜, 살리실산, 프로필알코올, 2-페닐페놀, 벤질알코올, 산화칼슘, 트리클로산, 붕산, 프로피코나졸, 심클로센; 트라이클로로아이소시아누르산, 4-클로로-m-크레졸, 구연산, 염화헥사데실트리메틸암모늄, 이산화티타늄, 에탄올, 하이드록시아세트산, 에톡실레이티드 알코올(C=12-14)(일반용에 한함)

- 4) 제올라이트, 트로클로센나트륨,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수화물 (NaDCC), 알킬디메틸벤질암모늄클로라이드, 벤질(C12-C14)알킬 디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4)[(에틸페닐)메틸]디메틸암모늄, 벤질알킬(C12-C16)디메틸암모늄, (C12-C18)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염화알킬(C12-C18)다이메틸에틸벤질암모늄, 과산화모노황산 칼륨 황산 (일반용 비분사형에 한함)
- 5) 에탄올, 글리세롤(어린이용품용에 한함)
- 6) 에탄올, 탄산수소나트륨, 글리세롤(칫솔·혀크리너용에 한함)
- 7) 2)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표4> 살균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가. 일반용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염산	HCl로써 0.07 미만	HCl로써 0.1 미만
2	구리	5 이하	_(10)
3	황산구리(II)	구리로써 5 이하	_(10)
4	황산구리(II), 오수화물	구리로써 5 이하	_(10)
5	에틸렌다이아민테트라아세트산, 사나트륨염	20 이하	_(10)
6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트륨	NaOH로써 5 미만	NaOH로써 5 미만
7	2-프로판올	50 이하	50 이하
8	과산화수소 ⁽¹¹⁾	0.5 이하	0.5 이하
9	차아염소산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0	차아염소산칼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1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로써 5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12	이산화염소 ⁽¹²⁾	10 이하	10 이하
13	모노에탄올아민	0.3 이하	0.3 이하

가. 일반용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4	개미산	1.5 이하	1.5 이하	
15	산화아연	10 이하	_(10)	
16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30 이하	35 이하	
17	소듐 피리싸이온	3.0 이하	_(10)	
18	은	1 이하	_(10)	
19	아연 피리싸이온	4 이하	_(10)	
20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8 이하	15 이하	
21	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바민산 (IPBC)	8 이하	_(10)	
22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2 이하	50 이하	
23	염화디옥틸다이메틸암모늄	0.2 이하	20 이하	
24	염화옥틸데실다이메틸암모늄	0.2 이하	50 이하	
25	글리세롤 ⁽¹³⁾	30 이하	30 이하	
나. 특수목적용 중 어린이용품용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2-페녹시에탄올	2 이하	1.3 이하	
2	구연산	3 이하	2 이하	
다.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연번	물질명	일반물체용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1	유효염소 ⁽¹⁴⁾	0.019 이하	0.008 이하	0.0025 이하

주(10) 함량 제한 없음

(11) 필터용은 분사형에 한하며, 분사형 함량 기준은 0.3% 이하 적용

(12)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13) 필터용에 한함

(14)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조제1항에 따른 전기분해 방식으로 수돗물, 염화나트륨, 염산으로부터 생성된 활성염소

5. 제품 내 미생물한도

특수목적용(어린이용품용, 칫솔·헹크리너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총 호기성생균수가 500개/g(mL)이하, 대장균(*Escheric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는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미생물한도 시험법에 따른다.

제2장 살조제(Algicide)

1. 적용범위

살조제란 일반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외 물놀이시설 및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시키기 위해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살조제의 용도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600 이하	600 이하
2	클로로포름	100 이하	300 이하
3	과아세트산	1,400 이하	— ⁽¹⁾

주(1) 함량 제한 없음

4. 사용가능 주성분

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살조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3) 심클로센, 트로클로센나트륨
- 4) 제올라이트(비분사형에 한함)
- 5) 2)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표4> 살조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차아염소산칼슘	유효염소로써 10 이하	유효염소로써 5 이하
2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로써 0.3 이하	유효염소로써 1 이하
3	이산화염소 ⁽²⁾	20 이하	10 이하
4	황산구리(II), 오산화물	구리로써 3 이하	구리로써 15 이하
5	과산화수소	0.3 이하	0.3 이하

주(2)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제12부 구제제품(Insecticides and repellents)

제1장 기피제(Insect repellents)

1. 적용범위

기피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살균과 살충의 목적이 아닌 쌀벌레 등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파리, 모기 등에 사용되는 보건용 기피제품,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기피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표1> 기피제의 용도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¹⁾

주(1) 깔따구용, 하루살이용 등 특정 날벌레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1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전 제품 (전 제형)	5 이하
4	나프탈렌	날벌레용 제품 (전 제형)	— ⁽²⁾
5	1,4-디클로로벤젠	전 제품 (전 제형)	— ⁽²⁾
6	농약관리법에 등록된 성분	전 제품 (전 제형)	— ⁽²⁾
7	보건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 ⁽³⁾	— ⁽²⁾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및 제형	검출허용한도
8	감염병예방용 살충제로 등록된 주성분	전 제품 (전 제형)	_(2)
9	수은	전 제품 (전 제형)	1 이하

주(2) 「안전확인대상생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쯔벌레용은 제외함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쌀벌레·쯔벌레용	날벌레용
		전 제형	전 제형
1	폼알데하이드	5 이하	5 이하
2	아세트알데하이드	40 이하	_(4)
3	디메틸포름아미드	_(4)	300 이하

주(4) 함량 제한 없음

4. 사용가능 주성분

기피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7)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피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피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3) 디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 겨자씨 오일, 디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쌀벌레용에 한함)
- 4) 시트로넬라 오일, 디에틸-메타-톨루아마이드, 겨자씨 오일, 디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좀벌레용에 한함)
- 5) 캄포르(좀벌레용 비분사형에 한함)
- 6) 시트로넬라 오일, 삼나무(cedarwood) 오일, 오렌지껍질 오일, 디에틸톨루아미드(날벌레용 분사형에 한함)
- 7) 2)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표4> 기피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가. 쌀벌레·좀벌레용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트랜스플루트린 ⁽⁵⁾	30 이하	— ⁽⁶⁾
2	에탄올	— ⁽⁶⁾	30 이하
3	살리실산메틸	45 이하	— ⁽⁶⁾
4	피레트럼 ⁽⁵⁾	2.5 이하	— ⁽⁶⁾
5	이산화염소 ⁽⁷⁾	100 이하	500 이하
6	3-메톡시-3-메틸-1-부탄올	6.5 이하	— ⁽⁶⁾
나. 날벌레용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에탄올	— ⁽⁶⁾	25 이하

주(5) 좀벌레용에 한함

(6) 함량 제한 없음

(7) 액상 제품에 한하며, 단위는 mg/L임

제13부 보존·보존처리제품

(Preservative products, Preservative-treated products)

제1장 목재용 보존제(Wood Preservatives)

1. 적용범위

목재용 보존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목재가 부패,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도료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표1> 보존제의 용도

목재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벤젠	전 제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전 제형	5 이하
3	염화비닐	전 제형	5 이하
4	무수 크롬산	전 제형	_(1)
5	중크롬산나트륨	전 제형	_(1)
6	나트륨 펜타클로로페네이트	전 제형	_(1)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7	트리부틸주석산화물	전 제형	_(1)
8	수은	전 제형	1 이하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에틸벤젠	700 이하
2	(1-메틸에틸)벤젠	700 이하
3	자일렌(o-,m-,p-총합)	60 이하
4	톨루엔	70 이하

4. 사용가능 주성분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주성분은 다음 각 항목과 같다. 다만 2)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로서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목재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 2)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3) 붕산, 프로피코나졸, 에탄올, 붕사(보락스)
- 4) 산화 제2구리, 제타 싸이퍼메트린(비분사형에 한함)

5) 2)부터 4)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로서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 이하의 물질

<표4> 목재용 보존제 사용가능 주성분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분사형	비분사형
1	3-요오드-2-프로판일 뷰틸 카바민산(IPBC)	10 이하	— ⁽²⁾
2	1,2-벤즈아이소티아졸-3(2H)-온(BIT)	40 이하	— ⁽²⁾
3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0.3 이하	60 이하
4	2-옥틸-3(2H)-이소티아졸론(OIT)	0.6 이하	— ⁽²⁾

주(2) 함량 제한 없음

제2장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Preservative-treated filter product)

1. 적용범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차량 등 실내에서 표1에 따라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장치에 장착된 공기정화용 필터 자체의 항균·멸균·살균·보존 등을 위하여 필터의 표면 또는 내부에 살생물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다만 건물 내 공조용 필터, 수질정화용 필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의 용도·제형

용도	제형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필터형

2. 방출량 제한물질

다음 표2의 물질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항균처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 사용한 물질은 제시된 방출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화학물질 방출량⁽¹⁾ 기준

(단위 : mg)

연번	물질명	필터형
1	이산화티타늄	1,000 이하
2	이산화규소	40 이하
3	구리 및 그 화합물	구리로써 70 이하
4	산화아연	50 이하
5	질산은	15 이하
6	아연 피리싸이온	70 이하
7	옥타데실디메틸(3-트리하이드록시실일프로필)암모늄 클로라이드 (Octadecyldimethyl(3-trihydroxysilyl propyl)ammonium chloride, OTPA)	2 이하

주(1) 공기청정기·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필터에서 탈락된 해당 물질의 양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표2에 해당되지 않는 2)와 3)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내 보존용물질 사용 신청서와 함께 유해성 자료 및 물질별 방출량에 따른 위해성 평가자료 등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장에 제출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 1) 표2에 제시된 물질(사용시 물질별 방출량 기준 준수). 다만, 각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 기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
- 2)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사용 가능
-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섬유·가죽류용 보존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존살생물물질. 단, 위해성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수준의 방출량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해당 물질별 승인유효기간 이내에서 사용 가능

제14부 기타(Other product group)

제1장 초(Candle)

1. 적용범위

초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면사 또는 면과 화학 섬유와의 혼방사, 나무 등을 심지로 하여 파라핀, 소이왁스, 팜왁스, 비즈왁스(밀랍) 등 또는 파라핀 등에 소량의 지방산이나 기타 경화제를 혼합하여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초의 용도

발광용, 방향용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품	검출허용한도
1	벤젠	방향용	5 이하
2	염화비닐	방향용	5 이하
3	트리클로로에틸렌	방향용	5 이하
4	붕소산 사나트륨염	방향용	_(1)
5	1,4-디클로로벤젠	방향용	_(1)

주(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에 제시된 물질별 정량한계 미만

3. 함량제한물질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화학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발광용	방향용
1	납 및 그 화합물 ⁽²⁾	납으로써 600 이하	납으로써 600 이하
2	폼알데하이드	_(4)	12 이하
3	글리옥살	_(4)	30 이하
4	메탄올 ⁽³⁾	_(4)	2,000 이하

주(2) 심지 및 몸통의 총 함유량을 말함

(3) 액상 제품에 한함

(4) 함량 제한 없음

제2장 습기제거제(Dehumidifying agent)

1. 적용범위

습기제거제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벽장, 장롱 등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제습을 목적으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다만, 상품 포장용인 것 및 식품이나 인체에 사용하는 것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1> 습기제거제의 용도

실내공간용⁽¹⁾,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섬유용

주(1) 자동차용(실내용) 포함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L)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납 및 그 화합물	납으로써 3.0 이하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카드뮴으로써 0.3 이하
3	비소 및 그 화합물	비소으로써 1.5 이하
4	수은 및 그 화합물	수은으로써 0.005 이하
5	6가 크롬	1.5 이하
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²⁾	0.1 mg/kg 이하

주(2) 실리카겔을 주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함

-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2-프로판올	45 이하
2	구연산	4 이하
3	벤질알코올	8 이하
4	제라니올	1 이하
5	벤조산벤질	5 이하
6	산화아연	1 이하

3.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3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3-메틸-3-메톡시 부탄올, 프로필렌글리콜, 탄산수소나트륨, 다이프로필렌글리콜메틸에테르, 에탄올, 이산화티타늄, 산화칼슘, 수산화칼슘, 수산화나트륨, 이산화규소, 산화은, 글리세롤, 제올라이트

제3장 인공 눈 스프레이(Artificial snow spray)

1. 적용범위

인공 눈 스프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표1에 따라 생일, 결혼 등의 행사에 인공적인 눈(雪)모양을 만들어 분사하는 형태의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인공 눈 스프레이의 용도·제형

용도	제형
행사용 ⁽¹⁾	분사형(스프레이형)

주(1) 특정 용도를 상세히 기재할 수 있음

2. 함유금지물질

제품 내에 함유될 수 없는 물질은 다음 표2와 같다. 다만, 검출허용한도가 제시된 물질은 제품 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제품 내 그 물질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2>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

(단위 : mg/kg)

연번	물질명	적용 제형	검출허용한도
1	염화비닐	분사형	5 이하
2	트리클로로에틸렌	분사형	5 이하
3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분사형	5 이하

3.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3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 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mg/kg)

물질명	분사형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Sodium Laureth Sulfate; SLES)	1,000 이하

- 2) 다음 표4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4>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아질산나트륨	7 이하

4.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의 용도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항목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항목의 물질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규정된 사용기간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1) 표4에 제시된 물질(사용 시 함량기준 준수)
- 2) 에탄올, 수산화나트륨

제4장 공연용 포그액(Fog fluid for performance)

1. 적용범위

공연용 포그액이란 공연 또는 행사 시 연무장치를 이용하여 연기·안개와 같은 효과를 연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표1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표1> 공연용 포그액의 용도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2. 함량제한물질

1) 다음 표2의 물질은 제품 내 원료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2> 제품 내 함유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번	물질명	전 제형
1	에틸렌글리콜	10 이하
2	디에틸렌글리콜	10 이하

2) 다음 표3의 물질이 제품 원료의 제조과정을 포함한 제품 제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된 경우에, 그 사용된 물질은 해당 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3> 제 품 내 사용물질 함량 기준

(단위 : %(w/w))

연 번	물 질 명	전 제 형
1	글리세롤	10 이하
2	에탄올	20 이하
3	리날로올	1 이하
4	벤질알코올	2 이하